
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2 . 15 . 평창군수(농업경영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8. 12 . 29 .

다. 상정일자 : 1998. 12. 29 . 제62회평창군의회(정기회)

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사용농기계의 내용연수 만료폐기 및 농업기계화 사업에 따른 일반 농기계의 보급을 보편화로 인하여 농기계대여소(대여센터) 운영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내 용

가. 평창군농기계대여소(대여센터)관리운영조례 폐지

4. 검 토 의 견

가. 본 조례는 농기계 보급율이 낮았던 1980년대 당시 행정기관에서 농기계를 구입, 운영자를 지정하여 다수 주민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기계대여소 관리운영 조례로서

나. 현재는 정부지원과 규모화로 개인, 작목반, 농업법인별 농기계 보급율이 높아짐에 따라 본 제도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고, 현재 보급되어 있는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만료되어 폐기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던 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함.

다. 기타 자구 및 내용에는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